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-119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(정릉동 109-2번지 일대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9-2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

가. 제한지역

연번	자치구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1	성북구	정릉동 109-2번지 일대	5,730	

나. 제한사유 :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및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제3호

라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2년

(단,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 자동 해제됨)

마. 제한대상행위

1) 제한대상

- 가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나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다)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- 라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마)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(토지분할 등)

2) 제한제외 대상

- 가)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(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)
- 나)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, 개축 및 재축
- 다)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
2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. 기타사항 :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02-2241-2863)으로 문의 바라며,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.

□ 지형도면

